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9월 16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엄셋별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엄셋별 의원)

- 가. 개정이유
 -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을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.
 -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.
 -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.
 -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 -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.
 -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~제12조).
 -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).

-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, 표창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4조~ 제16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민주시민교육은 서울, 부산 등 10개 광역자치단체, 21개 기초지자체, 9개 교육청 등에서 조례 제정·시행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
- 다만,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, 균형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